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809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정형윤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18. 5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285,092,2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5,092,223원과 그 중 237,618,63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7,473,593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18. 2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17. 10. 30. 10,000,000원 및 2017. 11. 1. 10,000,000원 및 2017. 11. 2. 10,000,000원 및 2017. 11. 3. 10,000,000원 및 2017. 11. 7. 5,900,000원 및 2017. 11. 8. 20,000,000원 및 2017. 11. 8. 2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285,092,2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5,092,223원과 그 중 237,618,63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7,473,593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 주변가족들은 2009. 7.경부터 C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고, C은 2016. 8. 27.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를 2017. 3.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용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2017. 9. 15.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2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C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피고의 E은행계좌로 2017. 9. 18.부터 2017. 11. 8.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일시	금액(원)	출금은행
2017. 9. 18.	500,000,000	F은행
2017. 9. 18.	200,000,000	F은행
2017. 10. 31.	10,000,000	D은행
2017. 11. 1.	10,000,000	D은행
2017. 11. 2.	10,000,000	D은행
2017. 11. 3.	10,000,000	D은행
2017. 11. 7.	5,900,000	D은행
2017. 11. 8.	20,000,000	D은행
2017. 11. 8.	20,000,000	D은행

라. C은 2017. 10. 23. G, H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C과 원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I는 2017. 12. 11. 증서 2017년 제858호로 “원고가 2017. 11. 11. C에게 4,920만 원을 대여하되, C은 이를 2018. 1. 25.부터 2018. 12. 25.까지 매월 41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C은 2018. 1. 2.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확인서와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리금 합계 285,092,22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7. 9. 18.부터 2017. 11. 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금융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채권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망인은 원고와 그 주변가족들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원고 등에게 2017. 8.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17. 9.경 D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에도 원고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7. 10. 11. 원고 등에게, 당초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모두를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행위가 원고 등에 대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2017. 12. 22.까지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와 함께 망인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망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서울 관악구 J아파트 K호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을 제공하였다.

○ 원고 등은 2017. 10. 20. 망인의 부동산 전부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망인의 부동산 모두를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7. 11. 2.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7. 10.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 등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7. 11. 13. 경료되었다. 원고의 주변가족들은 2017. 12. 11. 망인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주변가족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주변가족의 가압류등기는 2017. 12. 15.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1. 매수인 G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8. 1. 17.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0248호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소송계속 중인 2018. 8. 28.경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 등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 등에게 송금 내지 증여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그 정확한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하고자 망인과 피고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응해 제출명령을 하였고, 이에 E은행은 피고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그 회신이 2018. 9. 14. 법원에 도달하였다. 회신된 거래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현황이 명기되어 있다.

○ 또한, 원고는 2018. 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G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614호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또다른 채권자인 L도 위 G 등을 상대로 하여 2018. 3.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L이 제기한 소송에서 입수한 자료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관련 내역을 자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18. 7. 11.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L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9. 6. 27.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G 등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10. 11.경

망인으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으면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타에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고, 또한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거론할 정도로 망인의 변제의사나 자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보이며, 아울러 위 대출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각서를 교부받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의 부동산 전부에 가압류까지 신청하였는바, 적어도 그 신청 당시부터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설정되어 있던 제3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공동담보로서의 순 자산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는 2018. 2. 23.경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7. 10. 23. G 등에게 처분할 때 망인은 채무초과상태여서 위 처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위 관련 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으로 주장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약 1개월 전후로 이뤄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 당시에 망인이 무자력 상태였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한 점, ④ 원고는 망인의 다른 채권자인 L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늦어도 위 2018. 7. 11.경에는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그 무렵의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재차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제기한 다른 소송계속 중 입수한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을 통해 2018. 9. 14.경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위 2018. 9. 14.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망인이 일반채권자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임을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망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전경호, 판사 남민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242.4㎡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숙박시설

지층 175.63㎡

1층 175.63㎡

2층 175.63㎡

3층 175.63㎡

4층 175.63㎡

5층 175.63㎡

내역

지층-일반숙박시설(루대시설: 직원숙소, 직원회의실, 사무실)

1층- 일반숙박시설

2층- 주차장 124.64㎡

일반숙박시설(로비) 50.99㎡

3,4,5층- 일반숙박시설(여관(7실))

-끝-

